

# 중국내수유통시장 진출 관련 기본 법제도 및 유의사항

법무법인 덕형 서창영 변호사(cnlaw@deheng.com)

## I. 머리말

중국은 1992년부터 시범적으로 내수유통시장을 개방하기 시작하여 2001년 12월 11일 WTO에 가입한 후 내수유통시장 개방일정을 발표하고 2004년 12월 11일에는 내수유통시장을 대부분 개방하였으며 2006년 12월 11일부터는 완전히 개방했다. 내수유통시장을 대부분 개방한 2004년에는 내수유통시장 개방초기인 1992년에 비해 중국의 소비시장 규모가 5배정도 성장했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엑스포 개최 등으로 인한 중국내수유통시장의 높은 성장잠재력 때문에 2010에 이르러 개방초기의 10배정도인 인민폐 10조원 규모로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중국 내수유통시장에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내수유통시장에서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이미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중국유통업체들은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외국의 중소기업들도 거대한 중국내수유통시장의 틈새시장을 노리며 대거 진출하는 등 중국내수유통업분야에서 업계개편이 한창 진행되고 이때, 한국투자자들은 중국내수유통시장의 개방현황과 시장상황 그리고 관련 법률 및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거대시장인 중국내수유통시장의 진출은 아직까지도 관심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고 실제 투자는 미약한 실정이다.

이 글은 중국내수유통시장의 개방현황과 가장 기본적인 진출방법이라 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 상업기업을 통한 진출의 기본 법제도와 유의사항을 살펴봄으로써 중국내수유통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 실무적인 디딤돌을 제공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자 한다.

## II. 중국내수유통시장 개방 및 외국인투자 현황

기존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할지라도 자체 생산한 제품이 아니면 중국 내에서 내수할 수 없었고 외국기업은 유통영역에 투자할 수 없었다. 이러한 유통영역에 대한 외국기업의 진출제한은 무역권제한과 더불어 중국내수유통 시장 접근에 대한 중요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92년 7월, 중국 국무원은 ‘유통소매분야의 외자유치 문제에 관한 답신’이라는 문건을 통하여 처음으로 11개 지역에 중외합자 대형 백화점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외국기업의 중국내수유통시장 진입장벽을 시범적으로 개방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외국기업들의 중국 내수유통시장 접근을 가능케 하는 소매영역 개방이라는 획기적인 조치를 단행하였으나 이 역시 중국 합작/합자 파트너 측의 51%이상 지분확보, 판매상품의 수입 상품비율 30%이하로 제한, 같은 지역에 2개 초과불가, 도매와 대리수출입업무는 못하도록 하고 국무원의 심사허가를 받아야 되는 등 경영상의 제한과 엄격한 허가과정을 두고 있었다. 1992년 9월에 중국의 제1호 외국인투자 소매업체인 상해제일야오한(八佰伴)유한회사(상해제일백화점과 일본야오한주식회사, 홍콩야오한그룹이 합자)가 중국 국무원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은 후 1998년까지 허가받은 외국인 투자 상업기업은 277개에 달했다.

1999년 6월에 중국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대외경제무역부가 공동으로 ‘외국인투자유통기업시범방법’을 발표하고 소매업 진출 허가지역을 각 성의 성도와 계획단열시(14개 도시)로 확대하였다. 점진적인 내수유통시장 개방정책의 영향으로 2001년까지 프랑스의 까르프, 미국의 월마트, 독일의 메트로 등 세계50대 대형 유통업체들 가운데 2/3이상이 중국내수유통시장에 진출하게 되었고 중국의 제1호 외국인투자 도매업체인 상해백홍상업무역유한회사(상해제일백화점과 일본마루베니종합상사 합자)도 2001년 7월에 정식 허가를 받았다.

중국이 WTO가입 이후 내수유통시장은 획기적으로 개방되었다. 중국 정부는 2001년 12월 11일 WTO가입 시 내수유통시장의 대부분의 규제는 2004년 12월 11일 이전에 개방하고 외국인 독자투자상업기업 설립에 대한 제한은 2004년 12월 11일부터 철폐하고, 2006년 12월 12일부터는 화학비료 및 원유, 정제유 판매 등 일부 품목에 대한 도소매업 제한도 폐지시켜 중국내수유통시장을 완전 개방하기로 양허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04년 4월 16일에 중국 상무부는 WTO가입 양허안에서 약속한 개방일정과 내용을 반영시킨 ‘외국인 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을 발표하고 중국내수유통시장은 ‘시범적 개방’에서 ‘정상적 개방’으로 또한걸음 진보했다. 2005년 4월 2일에는 중국 상무부에서 ‘외국인투자제조기업의 내수유통업무범위추가문제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기존 및 신규 외국인투자 제조업체도 내수유통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2005년 12월 9일에는 중국 상무부에서 허가절차의 간소화를 취지로 하는 ‘지방부서에 외국인투자 상업기업 심사허가를 위임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2006년 3월 1일부터는 소규모 상업기업의 허가권한을 성급 상무부서와 국가급 개발구관리위원회에 위임하여 행사하도록 했다. 이로써 외국기업의 중국내수유통시장 진입장벽은 법적으로 거의 제거되었다.

‘외국인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을 발표한 2004년에는 구체적인 법 적용 불투명, 외국인독자투자 불가 등 원인으로 외국인투자가 미미했으나 2005년에는 외국기업들의 중국내수유통시장 진출은 현저하게 증가했다. 집계에 따르면 1992년 개방초기부터 2004년까지 12년간 허가받은 외국인투자상업기업은 314개에 그쳤으나 2005년도 한해에만 1027개가 허가되었고 그 가운데 도매기업은 2004년도에는 11개가 허가되었는데 2005년도에는 571개가 허가되었다. 2005년 이후부터는 중외합자투자보다는 외국인독자투자,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투자, 그 외에도 유통 분야의 M&A가 활발한 것이 특징으로 꼽히고 있다. 2005년도 한해에 허가받은 1027개 외국인 투자상업기업 중 외국인독

자투자기업은 625개 허가받았고 기존 합자상업기업도 투자자간의 지분양수도를 통하여 빠르게 외국인투자 투자기업으로 변하고 있는 바 2005년도 중국 상무부에서만 소매업M&A를 24건을 허가하였다. 2006년도 집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아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2006년 3월 1일 이후부터 소규모 상업기업의 허가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되면서 허가절차가 간소화되고 용이해짐에 따라 외국인 투자상업기업은 하루에도 수십 개씩 급증하는 걸로 전해지고 있다.

### Ⅲ. 중국내수유통시장 진출 관련 기본 법제도 및 유의사항

외국인 투자상업기업의 설립은 중국내수유통시장 진출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진출방법이라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외국인 투자상업기업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법제도를 살펴보고 유의사항을 짚어보고자 한다.

#### (1) 외국인투자상업기업의 경영범위

외국인 투자상업기업은 도매, 소매, 커미션 에이전트, 프랜차이즈 4가지 종류의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고 도매기업은 상품도매, 중개대리(경매 제외), 상품수출입 및 기타 관련 부속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며 소매기업은 상품소매, 자체 경영상품수입, 중국 내 제품을 구입 후 해외수출 및 기타 관련 부속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외국인 투자상업기업은 도매, 소매, 커미션 에이전트, 프랜차이즈 경영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업무를 취급할 수 있고 취급상품의 종류는 투자계약과 약정관에 명기해야 하고 수출입 품목은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범위 내에서만 수출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상업 기업을 설립할 때 취급업무와 취급상품의 종류, 수출입품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허가기관으로부터 포괄적인 경영범위 및 수출입품목에 대한 심사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 (2) 외국인투자상업기업의 설립조건

외국인투자상업기업의 설립조건은 아래와 같다.

### ① 최저 등록자본이 중국의 회사법에 부합되어야 한다.

중국의 회사법에 의하면 1인 투자 기업인 경우 최저 등록 자본은 인민폐 10만 위안이고 2인이상 투자 기업인 경우 최저 등록 자본은 인민폐 3만 위안이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외국인 투자상업기업 설립을 위하여 허가기관에 제출하는 신청서와 사업보고서에는 기업의 경영 및 판매 규모를 기재해야 하는데 허가기관은 이 규모에 상응한 등록자본을 등기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인민폐 3만 위안이나 10만 위안 선에서 설립된 외국인 투자상업기업은 없다. 한편, 도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투자상업기업은 초기부터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일반 납세자의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등록자본이 인민폐 5만 위안이상으로 등록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②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자본과 투자총액에 관한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투자총액이 미화3백만 달러이하인 경우 그 등록자본은 투자 총액의 7/10이상이어야 하고, 투자총액이 미화3백만 달러 이상 미화1천만 달러이하인 경우 그 등록자본은 투자총액의 1/2이상이어야 하고, 투자총액이 미화 1천만 달러이상 미화 3천만 달러이하인 경우 그 등록자본은 투자총액의 2/5이상이어야 하며, 투자총액이 미화3천만 달러이상인 경우, 그 등록자본은 투자총액의 1/3이상이어야 한다.

### ③ 외국인 투자상업기업의 경영기한은 일반적으로 30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중서부지역에 설립한 외국인 투자상업기업의 경영기한은 일반적으로 4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외국인 투자사업기업이 설립과 동시에 점포 개설을 신청하여 점포식 경영을 진행할 경우 도시발전 및 도시사업발전에 관한 관련규정에 부합해야 하고, 외상투자사업기업이 설립 후 점포의 증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도시발전 및 도시사업발전에 관한 요구 이외에도 기업의 등록자본이 완납되어야 하고 정기적인 연말 검, 감사 참가와 통과라는 요구 또한 충족해야 한다.

### (3) 외국인투자사업기업은 경영상의 제한

외국인투자사업기업은 경영상에 일부 제한이 있다. 즉 도매업의 경우 연초와 소금을 경영할 수 없고 소매업의 경우에는 연초를 경영할 수 없다. 그 밖에 동일한 외국투자자가 중국 내에서 점포를 30개이상 개설하고, 그 경영상품에 도서, 잡지, 신문, 약품, 농약, 농업용 비닐피막, 화학비료, 석유완제품, 식품, 식물기름, 식용설탕, 목화 등 상품을 포함 하면서 또한 상기의 상품이 서로 다른 상표에 속하고 서로 다른 제품 공급상으로부터 공급되는 경우에는 외국투자자의 출자비율은 49%를 초과할 수 없다. 한편, 외국인투자 사업기업은 많은 상품영역과 연관되어 있는바 일부 영역에서는 우선 그 영역의 주관부서로부터 비준 취득이 요구되고 있고 또 그 영역의 주관부서가 제정한 외국인투자 관련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예컨대, 외국인투자사업기업이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을 경영할 경우 중국의 신문출판총서가 제정한 《외국인투자도서, 신문, 정기간행물판매기업관리방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4)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허가 권한 및 절차

외국인투자사업기업의 설립절차에 있어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지방정부에서 허가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허가하게 된다.

- ① 상업방식이 TV, 전화, 우편, 인터넷, 자판기 판매가 아닌 경우
- ② 취급품목이 철강, 귀금속, 철광석, 연료유, 천연고무 등 중요한 공업원자재가 아닌 경우
- ③ 취급품목이 경영 및 업종 상 제한영역에 속하는 상품이 아닌 경우
- ④ 단일 점포 면적 5천㎡ 초과하지 않고, 점포수 3개를 초과하지 않고 상업기업의 설립을 통해 중국에서 개설한 동종의 점포 수량이 30개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 ⑤ 단일 점포 면적 3천㎡ 초과하지 않고, 점포수 5개를 초과하지 않고 상업기업의 설립을 통해 중국에서 개설한 동종의 점포 수량이 50개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 ⑥ 단일 점포 면적 3백㎡ 초과하지 않은 경우
- ⑦ 합자기업의 대주주가 중국투자자이고 상표와 상호가 중국 측이 소유한 경우

외국인투자상업기업의 설립절차상 우선 ‘개혁과 발전위원회’에서 투자프로젝트허가를 받아야 하고(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경제무역위원회에서 투자허가를 하고 있음), 그 다음으로 상무부서(기존의 대외경제무역학협작부서)의 투자계약 및 정관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법인등기부서에 등기해야 한다. 중앙 허가부서의 허가사항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지방의 허가부서를 통하여 중앙 허가정부에 신청된다. 중앙 허가정부에서 허가하는 경우에는 약 120일정도 소요되고 지방 허가부서에서 허가하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약 45일정도 소요됨으로 소요시간이 상당히 단축된다.

기존의 제조법인에 유통업을 추가하거나 신규 제조법인 설립 시 영업범위에 유통업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앞에서 언급한 설립조건 및 설립절차를 따르면 된다. 유의할 점은, 제조업이 영업범위에 유통업을 추가하는 경우 허가기관은 통상 제조제품과 같은 카테고리내의 제품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한다. 제조업과 유통업을 겸업하는 경우 제조수입이 총 매출액의 50%이상인다면 세무부서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투자기업에 부여된 감면 세율 및 2년 면세, 3년 반감 등 조세 우대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 대신에 조세우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제조업과 유통업을 구분하여 재무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한편, 제조업에 유통업을 추가하는 경우 허가부서에서 등록자본의 증자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 IV. 맺는말

중국내수유통시장이 완전 개방된 현재, 하루에도 수십 개의 외국기업이 진출하고 있고 백화점, 할인점 등 소매분야와 도매분야에서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이미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외국의 중소기업들도 거대한 중국내수유통시장의 틈새시장을 노리며 대거 진출하고 있다. 중국내수유통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은 중국내수유통시장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 경쟁업체 진출상황, 자사의 전략과 능력 및 관련 법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출방안에 대하여 치밀한 사전조사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필요시에는 관련 실무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중국내수유통시장에 진출함에 있어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끝/